
제1회서울특별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일시 1956년12월8일(단기4289년) 상오10시30분

의사일정

1. 제5차회의록통과
 2. 보고사항
 3. 단기4290년도서울특별시예산안에대한시장시정방침연설
 4.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견
-

부의된안건

1. 제5차회의록통과 ... 1面
 2. 보고사항 ... 2面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견 ... 8面
-

(10시 30분 개의)

○의장 김진용; 재석의원 홍순우의원외 33인으로 성원이되었습니다.

제6차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의록낭독

1. 제5차회의록통과

○간사장 신용석; 제5차회의록을 낭독하겠습니다.

(회의록 제5차회의록낭독)

○의장 김진용; 지금 낭독한 제5차회의록에대해서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이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제5차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제윤 이응린 두의원을 지명합니다.

다음에는 보고사항입니다.

2. 보고사항

○간사장 신용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공익전당포 조례중 개정의건의 12월6일자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부탁하였습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있으세요.

김상흡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상흡 의원; 의원동지여러분께 어저께 신문기자단과 회견한 말을 간단히 요점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의사당에서 체신부관계로 일이있어서 나왔는데 그날 기자단의 대표의 몇사람이 역시 요전에 의장에게 항의문을 제출한데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다.

이것을 정식 그것을 본의원을 통해서 의장명의로 요청했습니다. 그만치 그때 의장께서는 신문을들고 질의하는 도중에 도저히 그렇게할수없으니 그러면 운영위원장 보고에 대해서 또 신문기자단과 한번 회견하는 것이 어떻냐 물론 나로서는 본의회에 의결을 어든것이 없지만은 요것은 한번 이렇게할 수 있다. 요는 어떻게하면 하루라도 속히 언론인들이 우리의 회사이와 별감정이없이 지나가느냐 하는 이런 염두하에서 본의원이 기자단과 만남일이 있습니다.

그때에 김동순의원의 발언이 그것은 우리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들을 모욕한 것이 아니라 의장과 상의된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명하는데 역시 방법이 좀 약간 차이가 있었다.

기자단의 명부를 제출안했고 의장의 허가가 없이 여기에

들락날락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하는 것을 본의원으로서도 유감된 의사를 본의원이 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과거에 옥신각신 하는것을 일소에 부치고 만일 잘못된점이 있다든지 또 서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때려도 좋다.

우리가 서로 과거에 대해서는 타취하지말자고 이렇게 그기자단과 합의를 보고 왔습니다.

이것을 여러의원동지들께 보고하는 동시에 혹 의원중에서는 왜 사과를 했느냐고 이와같은 책망을 하실는지모르나 그 책망은 저로서는 달게 받을 각오를하고 여러분앞에 보고를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김인기 의원; 오늘 아침 8시30분에 승인 국민학교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천막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단히 춥고 또 학교시설이 여러가지 미비한 관계로해서 운영면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듣고 제가 가본 일이 여러번 있습니다.

학교에서 엄동을 닦쳐서 어떻게할 도리가 없어서 아직도 그 문작을 해달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교장을 만나서……여덟시에 나와서 자기가 나와서 손수 소과조각을 망치를들고 시방 문작을 해단다고 말씀하시기를 재료가 없어서 해달지못하고있는 이러한 딱한 실정에 놓여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적으로 이쯤 천막속에서 고통하고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알지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의장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용; 그밖에 보고사항이 있습니까
(「의장」 하는이 있음)

○문기옥 의원; 어저께 보고사항에서 신문기사에대해서 이상

은 더말을 앓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초 문기옥 그 불행한일을 관련해서 의장이하 의원들에게 황공하고 무엇으로 죄송스런 말씀을 들려야할지 말 할수없습니다.

이 문기옥의 실책이 연일 시간을 많이 낭비해 드렸고 또 더욱 김동순의원께서 본인에 관계로해서 신문기사에 무수히 마진것을 더욱더 죄송하고 감사한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언론계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마디 여쭙고자 합니다.

왜그런고하니 언론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말을 안하드라도 잘아시는바와같이 공정하게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기옥에 대해서는…….

○의장 김진용; 문의원 보고사항을 말씀하세요.

○문기옥 의원; (계속) 문기옥이를 갖다가 동아일보에서는 문기옥의 장남이 죽었다. 장남은 지금 마흔두살입니다. 모대학에 소위 선생으로 눈이 말뚱말뚱하게 떠있어요. 그것을 죽었다고 신문에 기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접직접으로 고통을 받는데 더욱 고통을 받고있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문기옥 큰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문기옥을 들추어서 보도했는지…….

문기옥 큰아들이 죽었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지금 문기옥 자신과 겸해서 김동순의원에 대해서 발언을 고만두어라 마러라 하시지만은 신문기사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기네가 시정한 연후에 제3자의 책하는 것을 너의는 언론계에 대한 곡해가 아닌가 해야 될줄 압니다. 이것을 충분히 반성하셔서 이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간절히 바라고 이번 이 일에대해서는 제선생에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보고사항 없으세요.

그러면 보고사항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이것은 일요일로 하기로 다시 말씀이 요청이 있어서 여러분께서 그 동의를 한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부시장이 잠깐 설명하신다고 합니다. 말씀 드리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신용우;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초하룻날 우리의 4290년도에 예산안을 내놓고 그 자리에서 시정방침을 말씀드려야 할터인데 저이들 사무적행정에 따라서 그렇게 못되고 내일이면 예산에대한 인쇄서도 프린트도 완전히되고 시장께서 말씀하실 시정연설도 유인물도 내일이면 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모래 월요일이면 전부 유인물로해서 여려의원들께 올리고 그 자리에서 방침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 싶어서 우리로서는 준비가 못되어서 오늘일정을 바꾸어 주셨으면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모래로 미루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래는 전부 유인물로 배부해서 할가합니다.

(「의장」 하늬이 있음)

○김주홍 의원; 예산결산위원회에 한 위원으로서 말씀 않드릴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아시는바와같이 지방자치법제5장에 제3절 예산과 결산 거기에 13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년도개시전에 의회의 의결을 경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시행령 73조에 자치법 제136조에 예산은 지방세 기타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하고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하여 편성한다.

자치단체의 장은 익년도의 예산안을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6월에 정기회의 개최초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되어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같이 정부회계연도가 6개월이 되어서 회계연도가 정월초하루날부터 신년 정월초하루날로부터 개시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11월초하루날로부터 열리는 이회의가 소위 회계연도 개시전에 정기회의올시다.

따라서 시장은 예산안을 12월초하루날 이 본회의에 상정시키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의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일이올시다.

또한 저의 의회로서는 회의규칙에서 아마 그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되면 그 집행에 사무에 커다란 지장을 갖어올 것을 두려워서 지배하는 규정을 만드른바입니다.

이번 예산회의에 있어서 예비심의를 각해당분과위원회에서 닷새동안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열흘동안 그 종합심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 연장할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있어요.

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가지고 질의전이 있을것이고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서는 30일을 초과하지않는바로는 의회가 규정한바 있습니다.

오늘 8일날이고 내일모래는 10일이 올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5일동안 연장할 수 있는 그런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되가지고 질의전이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심사에 들어가서는 20일을 초과하지않는 제한을 우리의회가 결정한바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8일이고 모래면 10일입니다.

모래면 틀림없이 예산안이 상정되고 시장의연설이 있을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거기대한 질의가 없을수 없고 곧 예비심사에 들어간다하드라도 금년안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회자체도 지방자치법이나 회의규칙에 범법하지않으면 안될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여기대해서는 물론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지라 이렇게 제가 하는것이 아니올시다만은 물론집행부에서는 첫번 열리는 본회의고 따라서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각별한 연구와 검토가 있고 여기 참견하는 관계로해서 시일이 지연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은 우리의회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역시 좀더 신중한 태도를 가지고 열의있게 심사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믿어저서 의회자체도 이회의규칙이나 우리법에 의해서 규정된 것을 그대로 준수할 수 없는 환경에 이르지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이것이 예산상정과 연설이 늦어져서 이런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의원제씨께서도 아시고 집행부에서도 알려주시기 바라서 부시장보고말씀에 참가합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감사결과에 대한 질의 의견 이결상정합니다.

내무국소관 구청 동행정에 대해서 신중수의원이 먼저 질의 합니다.

3. 시정감사결과에대한질의의견

○신중수 의원; 저번 시정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내무위원회 소관사무를 몇가지 제가 들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봤댕자 결국 답안나온것도 봤읍니다만은 오히려 우리가 요망이되고 과연 실천에 옮겨줄는지 대개 여태까지 해오는 얘기가 「서서히 고쳐보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고쳐보겠습니다」 하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같읍니다.

9개구청을 다 돌았읍니다만은 제담당구역인 3개구청을 돌아다니면서 사무감사를 해봤읍니다.

대부분이 3개구청의 요망사항을 볼때 대부분이 같은것입니다. 이것을 전부 이양해줌으로서 우리구청이 자주적인 입장에서 행정을하겠다 이런실정에 놓여있읍니다.

그중목이 전부 다 22중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구에 이양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또한 동행정에 대한얘기를 몇가지 묻겠습니다.

4288년도4월18일자로 지방자치제를 전제로한 동을 개편한바 있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과거의 동회를 동제로 개정한다는 그명목은 좋으나 오히려 과거의 동회는 자주적입장에서 자치를 해왔다고 보겠읍니다. 그러나 개정후에 있어서는 전부 손발을 꼭 붙들어 매놓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논데 지나지 않겠다고 보였읍니다.

당시에 김태선시장이 자기의 권한을 확대시킨것밖에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과거 동회는 서울특별시의 혜택을 안받고도 동회비를 징수해서 자주적인 입장에서 서울특

별시의 행정을 다 협조해왔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동제 고 개정해놓고 영달조차 3개월동안 안 주고 공무원의 월급과 양곡등 일제히 주는바 없어서 3개월간 고통을 느껴옵니다.

당시에 각동회에서 전부들고일어나서 문을닫겠다는등 이렇게 노니까 서울특별시에서도 당황해가지고 내무국장이 각구 단위로 다니면서 좌담회를 해가지고 다시 개선된바 있습니다 만은 오늘아침에도 제가 나오다 어느동을 들여다보니 역시 몇달동안 영달이 안되서 불도 못피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런현실을 집행부에서 알고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확실히 인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제개정당시에 동장이 관장한다는 사무 39개조를 이양해주었습니다만은 그것은 말뿐이지 과거 동회대로 거기 서다 하고있었습니다.

그중에 단두가지 종목이 다르다고 한다면 병사에 관한 사무라든지 세월조사 이런두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양한다는 말뿐이지 실제 이양을안고 항상 구청이나 시에서 얘기는 동은 실질적으로 동직원이 그사무를 할수 없다 말하면 무시 하는 태도를 가지고서 개편을 해놓고 직접 줄수있는 것은 안 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동제로 개편해놓고서 직원을 교육을 시켜놓고 서울특별시 말초행정에 이바지하게할 생각은 안하고 그냥 내 버려두고 있습니다.

당시 동장들이 서울시에 모여서 과거 동연합회가 있을때에는 그것을 모체로해서 중앙에 건설도 하고했습니다만은 말하면 동회장을 동장으로 고쳐놓고 관리라고해서 명령대로 움직 이라고해서 꼼짝못하게해서 행정이 제대로 안된 것이 사실입

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직원들이 질이 좀 낫다는 것은 인식합니다만은 그들의 질향상에 노력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까지 그냥 방임해논 것은 서울특별시가 의당 책임을 저야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다 동사무소를 들여다보니 저 출신구에 동직원이 할수없이 그만둔예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 동회장은 어떻게해서든지 직원생활보장을 시켜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단말이에요.

그래서 세명이 그만둔예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지지않으면 안될줄로 알며 규정된 사무이양을 완전히 해주실수있는지 없는지 여기 대해서 확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와같이 「서서히 해보겠습니다」 하는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확답을 해주실것과 또한가지는 서울시행정이 잘되고 못되는 것은 저로서는 이시행정최말단조직이라고하는 동밑에는 통반장이 있습니다.

이통반장운영문제는 고위층에서 많이 연구도 하고있는것 같습니다만은 통반장의 대우라면 어떤월급을 주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말한마디 못하고 위에서 시키는데로 1년 열두달 가진 심부름을 다해주는 통반장에 대해서 시당국에서 너무 냉정하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년말이면 수고를 했다고해서 동장이 무슨돈을 빌려서라도 사과궤작이라도 주었습니다.

이동제를 개편해놓고서는 그나마 전혀 할수없어요.

그렇니까 동운영은 전연 움직이기 곤란한 것입니다.

그네들에게 아무대우도없이 중앙에는 국민반운동위원회라

고까지 만들어논 것을 시정감사때도 봤읍니다만은 그런 죽은 조직체를 놔두지말고 좀더 실질적으로 움직일수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통반운영에 있어서 크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로서는 이 정도로 마치겠읍니다.

○의장 김진용; 질의중에 아까 보고사항에 있어서 말할것이 빠져서 말하겠읍니다.

오늘 물론 시장이 나와서 있을터인데 긴급회의가 있어서 시장이 못나온 모양인데 회의가 끝나는데로 곧 나오겠다는 연락이 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적십자회비 징수문제에 대해서 강을순으원의 질의가 있겠읍니다.

○강을순 의원; 강을순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할 것을 몇가지 말하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안하겠읍니다.

골자만 말하겠읍니다. 적십자회비관계 위생경찰사무관계 소방과관계 세가지를 들어서 말하겠읍니다. 전번에 시정감사의 결과 본의원이 적십자회비문제에 있어서 심심한 감사를한바 하등의 시에서 관여할바없는 서울시예산에서 각구청에 해당되는 금액을 동사무소를 운영에 필요한 영달액에서 공공연히 공제했다는 사실은 전번 감사보고서에 나타나서 잘알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중구청 성동구청 중구청에서나 89년도 적십자회비에 해당액을 533만4천환을 동운영에 영달밖에서 예산에 승인없이 무조건공제했던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본의원이 생각할 때 공익횡령이라고 단정않을수없읍니다.

성동구청은 89년도에 적십자회비 343만2천환 그중에서 유용 52만3천백44환 성동구청 역시 중구청과 동일한 방식으로 동령달액에서 3백43만2천환을 공제했든 것입니다.

이점은 어떤 이유로서 공제했는지 또는 주무책임자가 그러

한 지시를해서 한것인지 또하나는 구청장단독으로 했는지 그 점 명백히 해명해주어야 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경찰소관에 있어서 감사처리전말에 있어서 소방 공동변소 관리인의 일당 2백환을 6백환으로 지불하고 왔다고하니 묻고저 하는것은 청소차가 경찰국에서 직접 취급하고있는 관계로해서 각급서장들이 청소에 원활을 기할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경찰서단위로 배정해서 했으면 가장 청소를 원활히 할수있지 않나해서 묻는것입니다.

서에 넘겨 줄수있는지 없는지 다음은 소방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소방에 대한 총예산은 1억2천84만5천6백환이 책정되었으나 소방과에 예산영달액이 4천5백64만9천6백8환 이것은 어떤이유로서 이 소방과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불량한지 그 점을 명백히 해주고 금년에 들어가서 소방화재사건이 117건이라고 하나 다행히 이러한 커다란 화재가 없든 것은 소방과에 심심한 노력에 있다고 하나 앞으로 있어서 현재 이소방예산에 영달나간 것이 4천5백64만9천6백8환이고 보니 이로서 서울시시민의 재산을 보호할수 있느냐 없느냐 말인것입니다.

전번에도 심사했으나 호수(布製) 소방과에 필요한 "호수"가 2촌2분61이 1천2백21본이고 1촌2분61이 3백24본해 갖고 합해 1천5백본이 되었으나 그것을 반듯이 구입해 주어야 소방사업에 만전을 기할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구입해 줄수 있는지 없는지 말해주고 현재 소방관계는 경찰관이 주로 응원경찰관이 약144명인데 응원경찰관보다도 소방관계만이 소방사업에 종사할수있는 인원은 확보할수있느냐 없느냐 그 점 명백히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소방인원이 164명 경찰관이 144명해서 계 308명인데 증원의 인원은 534명이 필요한 인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인원을 충당할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은 내무국소관으로 성동구청기지에 대한 질의가 홍용준의원이 나와서 하겠습니다.

○홍용준 의원; 본의원이 질의하려는 것은 성동구청 국사대지문제입니다.

성동구청은 과거에 있어서 청사문제에 대해서 가진 각도로 청사대지를 알선하고 있던 차제에 82년도 5월경에 지금 현 성동구청 청사 지대지는 그당시에 귀속재산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당시에 "손흥만"이라는 사람의 소유로서 관계당국의 임대계약을 완료했으나 당시성동구청장이 시와 협조해서 그 성동청사 6백60평 구청 청사대지로 내주면 그대지대신 시로부터 거기에 적합한 대지를 알선해 주겠다는 약속하에 당시에 "손"씨는 개인이 아니고 시에서 관청에서 일하니 물론 그만한 대지를 알선해 주려니 하고 자기의 대지를 내 주었습니다.

그후 성동구청이 82년5월경에 착공되어 오늘날까지 그대지를 알선안해주고 있는 관계로 해서요. 일전에 본인이 시의회에 진정해서 재정위원회에서 알선해주라고 통고했습니다.

그대지문제가 구청에서는 4백여평 밖에 쓰지않고 나머지는 86년도에 성동구청장 (현중구청장)이 엄연히 무허가 판자집 13호를 지어서 매호에 10만원 내지 20만원 가까운 금액에 매각했습니다.

이러한 처사를 함으로써 그당시"손"씨는 6·25 사변으로 말

미암아 이복으로 납치당하고 그의 처되는 분이 그당시는 그다지 생각지 않고있다가 그후 가세가 곤란해짐으로써 성동구청장에게 무허가집을 건립해서 매각하는 눈치를 알고 그의 처는 청장을 심방해서 기왕 집을 지어서 남에게 내놀바에는 집한채라도 줄것같으면 생계를 유지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해도 안되었습니다. 660평을 "손"씨가 시에 대지를 양보함으로써 후면에 있는 대지 백여평을 길 모에게 불입해 주었습니다.

이 백여평도 기왕 그사람에게 불입해줄바에는 자기(손씨)에게 달라고 했으나 그것도 말을 듣지않었습니다.

판자집 13호에 대한 그것이 매호당 10여만원으로 전매해서 현재는 평당 24만원에 해당하는 가격을 주고 사게합니다. 이 점포에 대한 문제와 백여평에 대한 성동구청으로 하여금 처치한데 대해서 13호에 대한 무허가점포를 지어서 매각한이유 이것을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다음은 소방사무…… 내무국소관입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의사진행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확실히 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서면상 각분과위원회에서 두분씩 나와서 질의를 하게되어 있고 보충질의로해서 몇분의 한계를 그어주어야 되어요.

그렇지않으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의장 김진용; 그러면 한소관에 대해서 두분씩 말씀하시기로 작정이 되었는데 보충질의를 대해서도 역시 두분씩을 작정하는 것이 어떠냐 의사진행상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지요.

(「네」 하는이 있음)

그러면 두사람씩 보충질의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준식 의원; 질의는 각분과에서 두분씩 질의하기로 작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라는 것은 질의하실 그분에게다 보충말씀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가 보충질을 하게되는 것은 답변을 들은후에 거기에대한 보충질을 하는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두분씩 보충질을 하도록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 있었음)

(「의의가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의장 김진용; 지금 김준식의원동의에 재청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본의원이 이의가 있다고하는 것은 왜 보충질을 한테 겸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서면상으로 발언권언은분이 나와서 자기가 가진 주관점에서 했기때문에 다소 의아한 점이있다고 할것같으면 그보충질 의에 다시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분과위원회에서 보충질을 한다음에 종합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두분 내지 세분을 여기서 인원을 정해가지고 보충질을한 다음에 종합질의가 나올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이갑수의원의 개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개의 동의 다성립이 되어서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보고합니다.

재석의원40인 개의 가가 20인으로 되어서 의장은 여기에 개의가 가하다고 찬성합니다. 그래서 개의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밝혀야 되겠는데…….

두분씩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느이 있음)

두분 이상은 안됩니다.

지금 내무국소관에 대해서 두분이 말씀하시고 보충으로 한 분하시고 그밖에 한분이 남았습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이원찬 의원; 소방사무에 대해서 간단히 몇마디 말씀올리겠습니다.

아까 강을순의원이 소방소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내가 듣는바에 의할것 같으면 O.E.C 원조로다가 소방차가 8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승무원이 7명이라고 할것같으면 7, 8은 56…….

56명이 없다고 할것같으면 모처럼 도의적으로 받은 원조 물가가 폐차라고 할까 창고에 갖다두고 쓰지못하는 경우에 도달한다고 보지않을수없습니다.

그런고로 거기에대한 인원보충에대한 방법의 대책…….

또 이 소방사무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다아는바와같이 시장에 가까운 곳에서 화재가 가끔발생이 되는데 듣는바에 의할것같으면 그런곳에는 물탱크가 없다말씀이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방법으로 그물탱크를 만들어서 시장에

서 자주 나는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집행부당국에서는 어떤 용의를 가지고 계신지 그두가지를 질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내무국소관 질의는 이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신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동행정강화 구청사무이양.....

지당하신 질의이시고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그날이 정상적인 민주행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과거일시동안 시청으로부터 구청으로 이양된 사무가 상당한 건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또한 이양이 진행되고있고 앞으로도 많은 안건이 이양하려고 하는 확고한 계획이 있고 또 시장시정방침에도 일일이 표현이 되었고 또시장께서 항상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행정강화에 대해서는 245동장이 이구동성으로 동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별회계폐지와 일반회계로 하라고 해서 신년도예산에는 일반회계로다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예산으로보아서 동행정을 어떻게 강화하게하느냐 하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양에 대해서는 과거 1년동안 사무이양하겠다고 동장 각 구청장 여러분 앞에서 이사람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11종목에 약속을 실행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 각동장들의 요청하시는 병사사무 호적사무를 어떻게 하느냐 부과사무를 어떻게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 호적사무가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앞에서 여러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법원에 추진중에 있고 또 그사무를 상당하신 부처

에서 조치하겠다고 곧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국회에 제출하면은 이것은 절대로 틀림없이 통과가 됩니다.

다시 이것은 상당한 시일을 요하기 때문에 그시간까지 용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가 해결되면 병사사무가 자연히 동행정으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세원조사를 해야된다 이것은 지금은 호별세기본조사를 해서 구청에 내는것입니다. 아마 동장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은 이것은 부과하는데 권한을 달라 이것은 법적으로 좀 난관이 있는것같어요.

구청장이 하여야한다. 31등부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면은 어느시기에는 징세사무도 동회에서 할 수가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지금 부임하신 부시장께서는 부임하신 직후 동행정강화에 대한방안을 가져오느라고 관계과에 전문동행정에대한 직원을 배치해서 동행정강화에대한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마 불원간 어떤 조치가 될것같습니다.

우선 과거에 750명이라고 하는 징수직원이 구청에만 배속이 되었던것을 동으로 전부 배치했습니다.

차차 이런 것으로 보아서 동행정이라는 것은 강화된다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반장 대우문제도 역시 동장전원이 요망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해서 대우를 할수있느냐 자못 여기에 수반되는 중요한 재정문제 재원만있다면 언제든지 통반장을 도울수있도록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아마 재정이 허용치못해서 못하지만은 전에 약간의 예산을 각구청에 영달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현동제를 개편해서 과거의 동회제로해라 그래서 동장이 자의로 동회비를 징수해서 하도록해달라하는 그런 요망이지만은 이것은 꼭 어려운것같아요. 왜 그런고하니 지방자치법에도 동이라고 했지 동회라고 하는것은 조치가 되어있지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과거의 동회제로 환원한다고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잘아시고 계시는 바이겠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결론으로서 질의하신 동행정강화 구청에 사무이양은 앞으로 1년 가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로 내무국장 아무게 잘했다고 칭찬을 제가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을순의원께서 적십자회비에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운동을 많이했습니다.

말씀 좀 하지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책임이 내무국장한테 있어요.

왜그런고하니 정부통령선거 그다음 선거 복잡다난한 시행정이 되어서 이것을 제 기일내에 징수못했습니다.

또한 할수도 없었어요. 그리고보니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각도에서는 전부 완납을 했다고 적십자사에서 기압기와..... 우리시장이 처음에 부임하셔서 이것을 중요한 문제가 생겼다고 며칠날까지 징수 완납 못하면 총무과장이라도 책임을 지고 사표를 받아야 안되겠느냐해서 상사의 명령이라고해서 제가 직접 나가서 며칠날까지 징수못하면 총무과장 진퇴에관한건이라고 생각해 보니 아주 구청에서 당황했습니다.

해서 이기일내에 완수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가 된것같아요. 제가 사후에 맞겠습니다.

이것은 다 빈약한 예산으로서 이런 사태가 나옵니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사회교대)

○재무국장; 성동구청의 대부어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동구청사를 질만한 대지가 없어서 서울시에서는 대지를 물색하던 가운데 좋은 대지가 있는데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귀속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82년6월9일날 날자로 서울시관재소장에게 임대차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벌써 다른사람이 아까도 여러분이 들으신 송만호라는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임시관재소장은 다른사람하고 계약한 것을 알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용으로 쓰다고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82년9월12일 날자로 서울시장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임대차를 받으라고하는 보고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내용을 잠깐말씀들인다면 신당동 244의 1, 245의23, 246의 2, 247의 44 이총평수가 2천2백 몇평입니다.

이것을 서울시에 임대해준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고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성양행 송만호와의 계약을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취소함. 단 서울특별시장 성동구청장 연대 책임하 매상대지를 한성양행에 알선함을 요함.

이것은 단기4282년9월16일자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땅을 성동구청의 산업과에서 대지를 알선

해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12일자로…… 그중에 사변이났습니다.

수복후 87년5월12일자로 송만호씨로부터 성동구 백48 18 백92 합해서 불하를 받았는데 여기에대해서 추진해달라고 의뢰문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5월28일날 서울 사세청장에게 서울시장의 간곡한 추진서를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당시에 또 송만호라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귀속재산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은 임대차로 추천해달라고 이런 의뢰가왔습니다.

그목적물은 신당동 대 41평 동 대 755평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고 하는데 서울시장의 추천을 해달라고해서 87년 7월27일날자로 역시 간곡한 내용서로 추천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대차계약이 성립안되었습니다.

본건은 공공용으로 쓰기위해서 부득이 신청을 했더니 거기에 이 송만호씨가 독촉한것도 잘알고 또 서울시 임시관재소장의 보고문이라고하는것이 이 법문은 별구속하는것이아니라 하고 하더라도 서울시로서는 여기에대한 도의적책임을 느껴서 백방으로 알선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오늘날까지 적당한 대지가 물색이 안된것을 펍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그 부인이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땅을 구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말씀을 들었습니다.

시유지를 들이면은 상당한 평수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쓰실런지 시내용지 같으면 몰라도 시재산 즉 관물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판사람한테 또 전매를 한다든지 이런다면 시유지를 대부할수없으니 그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될수있는데로 물색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것을 빌려들어야 되겠는데 적당한것을 발견 못해서 이때까지 온것입니다.

이런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부인말씀이 결국무슨 생활이되는 무슨 이권이라면 이권이라고 할수있겠지만은 이것은 생활이 될만한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을 보드라도 무슨 생활하는 것을 구해들이면 좋겠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이물색을 하는데 저의들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그 경위를 말씀들이고 또 아까말씀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송만호씨가 쓰는 대지중 일부를 매각한것이지만은 이런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무슨오해가 있다고봅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쓰는 도중에 임대차계획을 갱신하겠다고 신청을 했드니 총평수의 지금 구청이쓰고있는 이외에는 관재청에서 다른사람한테 불하했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이것마저 서울시에서 써야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임대차계약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관계로 ○○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사건은 무슨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의장」 하는이 있음)

○부의장 이행득; 다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을순 의원; 이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을 소방과 또는 보안과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만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찰국장께서 나오시지 않았는데 감사결과가 이미 본인에게 갈줄압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나와서 답변할 준비를 하지않고 주무과장만 나온다면 충분한답변을 들을수있느냐 없느냐 아마 들을수없다고 봅니다.

그런점으로해서 경찰국장이 나와서 답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무과장의 답변은 들을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행득; 강을순의원의말씀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해야겠는데도 불구하고 과장이 나오는것은 좀 충분한답변을 기대할수없다고 동의했습니다.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재청이요」 「삼청이요」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없으면 주무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의로 들어갑시다」 하는이들 있음)

지금 주무국장님이 여기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면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밀고 다른소관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다음 재무국소관으로 예산집행과 초등교육비특별회계일시차입에관한결함 전당포 운영에 대한결함 시립병원결함 경전대시청간의 미청산에 관한결함 이안건을 박수형의원께서 질문하겠습니다.

○박수형 의원; 본의원이 질문하자는 요점은 첫째 예산집행의결함 그중에 「가」로서 일반특별회계 공사비지출관계 「나」 일시차입관계 3 청소및 분노작업에 관한결함 초등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유용에관한결함 공익전당포운영의결함 시유재산처리의결함 시립병원운영의결함 경전대미청산의결함

등입니다. 조목을들어서 간단히 질문하려고 합니다.

첫째88년도 예산총액은 일반회계와 11개특별회계를 합해서 195억환이라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서 또한 실제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산이 편성되서 집행이되고 또 결산까지 결말을지면 적어도 7할내지 8할의 지출이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8년도예산은 앞으로 몇달남지않은 이기간을두고 징수를 한데도 불과 6할밖에 못할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산은 동시에 무계획적이며 책상공론에 불과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첫째 세금수입은 약8할정도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늘날 집행당국에서라든지 정부에서 말하면 우리시민이 마음이 고약해서 정부의 하는바를 안듣고 또는 모든집행에 거역한다는 등등의말이 있습니다만은 이세금낸것을봐도 우리시민이 양과같이 순하다는 것을 알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재산수입에서 왜3할밖에 수입이 안되는가 특히나 국고보조면에 있어서도 3할내지 4할밖에 집행안되고 그러면 시민이 세금은 꼬박꼬박내서 시행정에 협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수입 잡수입 국고보조 수수료 보조금 즉 대상기관이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잘안낸다 이말에요.

왜그러냐하면 이점 밝혀줄 것을 바라며 또한 세출면에 있어서도 2, 3개세출비목으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도 어떤비목에는 1할내지 2할밖에 안졌고 더욱이 청소비는 상대방이 경찰이라고해서 무서워서 그러는지 그예산편성액을 꼬박꼬박 다주는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청같은데는 권력이 없다고해서 그랬는지 1할내지 2할밖에는 안준다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입

니다.

이런관계로 세출면에서도 균형을 상실하고 있으니 무엇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각종공사를 청부를 졌는데 도급액수는 약40억환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재정상으로 건설국이나 재무당국에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40억환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학교증축공사를 했는데 실제로 소비되는 것은 4할내지5할밖에 안먹는다합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40억환중에서 5할만이 실비가먹고 다른 것은 어디로 갔느냐 이폐단을 말하지 않고는 건전한 행정이 안되겠다고봅니다.

듣는바에 의하면 공사가 있으면 서울특별시에서 2, 3인 추궁하고 2, 3인 추궁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끼리 백만환내지는 서로 논아먹는다말어요.

남어지액수를 가지고 하청을 받은사람은 그것을 다른사람에게 또 하청을주어서 그돈이 소비되고 실제로 소비되는 액수는 5할밖에 안된다고하니 이막대한 토목비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것이 7, 8할은 공사비에 써져야겠는데 이와같은 실정이오니 이점을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영달관계가 중요한데 재정법에 의해서 모든것을 입찰을해라 하는 것이 규정되어있어요.

모든 관청에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사서쓰고있어요. 그래서 왜 소모품을 비싸게 사서쓰느냐고 했더니 본청에서 서면영달을하니 입찰을하고 시간이 소비되고 입찰하는 사람이 여러사람 왔다갔다하니 시중가격보다 2,3할은 비싸게됩니다.

그렇다면 1년중에 있어서 소모품이라든지 비품이 비싸게되면 2,3할의돈이 무의미하게 소비된다고 생각해서 이영달면에 있어서도 시정할 용의가 없는가 알고싶습니다.

그다음 일시차입관계 우리 서울특별시는 현장에 공사를해 놓고 돈을 못받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차입은 8억5천만환의 차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택비를 4억4천 다른 것을 합해서 11억환의 빚이은행에 있는것입니다.

금년회계년도내에 지불하지않으면 안될돈이 5억환가량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서 반환하겠는가 하는것도 좀 밝혀달라는것입니다.

다음 청소및 분노작업에 관한건 이견에대해서 중대한 것입니다. 보안과에서 와서 답변한바와같이 「이것을 우리손에서 제거해주소 우리도 이거먹을날이있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대통령 의 분부에 의해서 한다」 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9개경찰서에다 주력 6대내지 7대식주어서 어떤대행업자를 구한다말어요.

그러면 그대행업자도 많은비용을 먹혀서 대행을 받았읍니다만은 실제로해보니 이익이 안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연구한 결과 경찰국답변과는 먼 거리가 있습니다.

위생계장내지 주임되시는분들이 말하기를 자동차한대에 80목도식 넣어서파는때에도 있고 그냥 버릴때도 있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바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제저녁도 제가 물어보고 그제도 물어봤는데 260통이 한 자동차에 드는데 우리시민은 한통에 대해서 30환식 내게된다 말어요.

130목도라고하면 한자동차에 7천환을 시민에게 받는다 그거예요. 또 이것을 버린다고 했는데 가까운데가면 3,4천환받

고 먼데가면 여름철에는 만환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합해서 한 대가 한번 작업하게되면 만환수입이 된다말에요. 이것이 아침저녁하면 하루에 2만환수입이되고 한달 25일을하면 50만환버는거예요. 이것을 인건비와 자동차수리비를 쳐도 한30만환정도면 이한대가능히 사용료도내고 적어도 20만환내지 30만환돈의 이익이난다 그거예요.

180만환 가까운 이익은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9개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어도1월치가 몇백만환이 됩니다.

1년이면 1억6,7천만환이 됩니다. 1년에 납부하는 12억환을 합하면 적어도 1억2,3천만환이 됩니다.

우리시민의 세금을 받어서 사용하는이상 시민이 구명해달라는 것은 집행당국이 명백히 해달라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적 특별회계일시차입금 이자관계에 대하여 이문제에 있어서 시정감사할 때 마포구청이 당시 회계과장으로 있던 사람과 토의했으나 요전 시정감사보고할때 그것이 무슨 위법이나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쌈지돈이 주머니돈이다"라 말했는데 그러면 그말이 정당하냐는 것은 시간을두고 보았든지 요새 피차가 다 아는바와같이 회계법위반 사무위반등으로 국회 문교 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아서도 역시 정당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백만환의 이자는 어디서 어떤 의미로 낼것이나 이문제는 명백히 발키지않고는 앓될 일이니 해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익전당포관계 이전당포는 서울시내에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름이 전당포라고하나 대단히 중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중에 여러가지 은행이있으나 그은행을

하나의 특권적인 존재로서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고해도 돈 50만환의 대부도 못받는것입니다.

대부받는 계약이라는 것은 오늘날과같이 특권과같이된 특수한 계약이 따라있는것입니다.

자기의 입든 옷 시계 모든것을 갖고 실상 궁해서 긴급한 때는 애걸복걸해서 5천환내지 만환을 겨우얻어쓰는 것입니다.

전당포운영자금으로 1억4천만환을 서울시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의적절한 집행이야말로 우리서울특별시민을 대신하고 시민의 여론에 의거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이마당에 있어서 소홀히 넘길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당포직원은 실지로 임시직원은 5만환이상이고 주임수석사무원은 적어도 10만환이상의 수입이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전당포) 무엇때문에있느냐 구가라는 기관에서 공익전당포를 만들어놓고 이사람들은 구가의 돈을갖이고 시민의 물건을 집어놓고 고리대금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구가기관의 한 부분을 찾아하고있는 단체이니 만큼 많은주의를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유재산 처리에 관하여 시에서 갖고있는 토지의 총평수를 합하면 362만여평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더러빌어준 것이 26만평인데 적어도 10여만평은 사계 특수한 계급에있는 사람에게 논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조사해 보았더니 다계약위반이며 수수료 자체로 모다 저렴한 가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당국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민행정을 해달라는것입니다.

피차다 아시다싶이 우리 피난민이 5평 6평 10평이 없어서

오늘은 여기에 천막을 치고 내일은 저기로 옮겨야하는 그사람들도 국가에대한 충성심이 우러나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원의 수수료하나 받지못하고있는 것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이문제는 철저히 해줄것을 부탁하며 앞으로는 도시계획상 필요치않은 땅은 하로바삐 불하해서 시재정면에 결함이 없이 해주시었으면 합니다.

시민병원 운영방침에 대하여…….

영등포병원 종로6가의 시립병원등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 시민이 시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지 그것은 시민병원이라면 환자의 힘에 의해서 유료 무료를 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가정환경등으로 보아서 무료환자로 있는사람이 유료환자로 있고 유료환자로 있을사람이 반대로 무료환자로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의 국회의원이라든가 끝발이 샌 사람들이 명함등에 써주면 무료환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성을 집행하고 있는 것이니 사회보건당국은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행정에 대한 문제…….

이문제도 또한 우리의 소관은 아니나 재정문제에 관련시켜서 말하겠습니다.

서울시가 부녀과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했는지 피차 아시다싶이 고아원에가면 나이가 많아서 성의 의감을 갖인 고아가 많습니다.

그것을 무제한방치하고 고아원에 주어서는 않됩니다.

일정한 연령이되면 그들은 끄내서 직업도 알선해주고 하는 등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부녀행정에 있어서는 다만 부녀 문제에만 치중할것이 아니라 소년단등을 만들어야 하겠는데 이문제에 대해서 사회보건당국은 무슨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부탁하여 저의 질의는 끝나는 바입니다.

○의장 김진용; 지금 박수형의원이 아홉가지의 질의를 했습니다.

(「긴급입니다」 하는이 있음)

○조기항 의원; 우리는 지금 시정감사 결과에대한 질의를 하는중이 올시다.

우리가 시정감사를 해본즉 우리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느낀점 몇가지를 골라가지고 지금 시장에게 대해서 어떻게해서 이러이러한 행정을 해왔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이 올시다.

그것을 물었으면 이런이런 행정을 했습니다하는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답을 들어가지고 그답이 우리에게 만족한 답이 아닐경우에는 다시 질문한다 이렇게 하여야 될것입니다.

이래야만 우리 질의의 본정신인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여기에 명백히 밝혀야 될것은 우리가 질의를 하기위해서 우리 회의규칙에 제44조 올시다.

엄연히 시장또는 그보조기관에 질문을 할려고 할적에는 10인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된다. 질문은 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느낀 점을 가지고 시장에게나 혹은 시장보조기관에게 물어볼려고 할것같으면 대체로 조그만 사무가 아니고 각과에 걸친것이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사실상 시장이나 보조기관이 잘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서 의장은 이를 속히 시장에게 보내야하는 것입니다. 아까 내무국장과 재무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자치법에 국장까지도 보조기관이 아닐것입니다.

부시장만이 보조기관이 올시다. 그렇다고 하면은 시장도 아까 나오셨다가 그냥 내려가시고 여기 보조관이 안져계신데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인가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법에 엄연히 있는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회의규칙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도의적으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음 구성되어서 처음 실시하는 질의전에 시장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수 없습니다.

또한 국장과장이 답변했댔자 책임소재를 알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에의해서 반듯이 법대로 규칙대로 이것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셔야되겠고 만일 시장이 못나오신다면 부시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운수행정의 결함 시립극장 운영에대해서 김제윤의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김제윤 의원; 본의원이 소속하고있는 것이 재정위원회입니다만은 재무에 속한 문제는 별도로 이종구의원께서 얘기하기로 하고 본의원은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말씀들이겠는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운수행정이라든지 시립극장에 대해서는 주무위원회에서 양해를 구한 결과 본의원이 하계되있으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운수행정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합니다.

지방자치법개정안으로서 4289년 2월13일자 공포시행된 개정 자치법 제117조서울특별시의 분장사무를 볼때에 건설국소관사무로 도시계획 수도 하수도 건축 기타 토목과 운수에 관한 사무가 분장되어있는데 운수사무가 관리과에 속하게된 이유는 무엇인가 6.25사변전보다 교통량이 3배내지 4배로 팽창된 이현실에 6.25전에는 운수과로서 있었는데 지금관리과로 속한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국의 관리과를 두는것은 무엇때문에 두었는가 알기 곤란한 것은 관리과는 재무국소속인데 별도로 관리과를 두어가지고 재산을 관리케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관리과를 재무국에 돌용의는없는가 현재재무국에 운수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6.25전보다도 팽창되고 있는 현실에서 비추어서 운수과로 편성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것을 질문의 요지로 삼는 것입니다. 겸해서 또한가지 운영상에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현재서울시 지금 얘기한 관리과 운수계에서는 영업용차에 대해서는 허가권행세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에서는 검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고로해서 허가와 검사가 분리가 되어있는것은 무엇이냐하면 교통에대한 재제라든지 사고미연방지라든지 이런것을 하고있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다른 현실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자가용의 허가 이것은 경찰국의 지금 주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동차 사업규칙을 보면 이것은 교통부장관으로서의 대지에 ○○것을 위임사항으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서 영업용 허가권은 운수계 자가용 허가권은 경찰국에서 주관하고있는가 이것을 일원화할 수가 없

는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 시립극장 운영문제에 대해서 말씀들이기로 하겠습니까.

문교위원과 더부러서 본위원이 시정감사를 한 결과에 대한 느낀바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립극장의 설치목적이 시민의 문화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그목적이 있다고 극장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동시립극장은 이시간까지 "이시바시"라는 일인 명칭을 시장은 어떤 취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있는지 서면상으로 관재국과 임대차의 계약조치가 되어있는 관계로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본위원이 관여할바는 아니므로 서울시장은 임대료를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결과를 막을수 있을것인가. 시장은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초래했다고 보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로서는 전술한바와같이 시립극장 건립목적에 입각하여 공유물로 사용할수 있는 성질로 볼수있는데 시장은 이에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있는지 하는것이 질의의 목적입니다.

요는 지금 시립극장이라는 것이 민족문화예술을 목적해가지고 사실상 존속하고 있다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존속목적하고는 완전히 이탈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영남회관공사를 하지않으면 안된다는 이유를 들어 보면 제일중요한 것이 국제도시로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유로 삼고있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회당이 필요한대로 사용할수 있는 건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의사당으로 쓰시고있는 이자체가 시소유물이올시다.

이런 건물을 합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공 회당이 필요해서라는 목적은 사실상 영남회관을 갖기위한 구실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또 그런 의사당으로 쓰시고있는 건물과 시립극장은 어떤말 못할 문교부와의 무슨 관련성이 있다고하는 얘기를 희미하나마 듣고있읍니다마는 그런 말못할 이유라는 것은 하등의 이유가 되지않는것이라고 봅니다. 그런고로해서 어떻게 되었던 지간에 지금 제가얘기한 방향으로 시립극장을 공회당으로 한 다든지 또는 지금 의사당으로 쓰고있는 건물을 공회당으로 사용한다든지하면 기필코 시장이 지금 노력하고있는 이런 것은 안해도 될줄믿어집니다.

그런고로 묻고자하는 것은 이러한 등등을 언제까지 꼭 실현할 용의를 갖고있는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묻는바입니다.

또 따라서 여기 시립극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상에 뚜렷이 있다 말씀에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느냐 지금 시측에서 8명이라는 인원이 나와있고 권위자라 해가지고 8명 합해서 16명이 운영위원이라해가지고 시립극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기록상에서 나온 조직체라면 반듯이 거기에 임원의 임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무한장으로 되어있어요.

그 위원의 조직을 뜯어보면은 개인의 인격을 손상시키는것은 아닙니다만은 사계 권위자라는 인물이라든지 사실상 시립극장을 위해서 노력할수있는 대상이 안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런고로해서 명실공히 상대되는 시립극장을 운영하기 위

해서는 이운영위원회가 기어히 필요하다면 새로 조직할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바로 조직하기를 바랍니다.

또 동극장에 43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되어가지고 여기에다 그사람네들이 실지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종업원의 보수라는 것은 거기서 배급은 배급대로 받고 판매점에서오는 이득을 종업원의 후생비로 쓰고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모순을 초래하느냐하면 이중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을 반듯이 시정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두가지에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대한 명확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세무행정에 대해서 이중구의원이 말씀하겠습니다.

○이중구 의원; 본의원이 세무행정 아무것도 알지못하는 사람으로 9개구청과 본청에대한 부과징수에대한 사무를 갖다가 감사를 했습니다.

그결과 몇가지 요망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의의 취지는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는것만으로 하지않고 보다도 이렇게 하므로써 장래 서울시세무부과행정을 어떻게 했으면 우리들이 공정하게 시민이 부과할수있으며 거기에 불평이 없을까 하는 것을 요망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구청에 불공평이 있으니 거기에대한 졸렬한 의견이지만은 참작해주십사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8개구청에서는 아무것도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얘기한것을 들을것도 있으니내년부터는 잘하겠다 그러나 성북구청장만은 너의가 한 것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에 대해

서는 물론 부과행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신념과 체계가 책임진다는 것을 말씀하므로 본의원으로 있어서 대단히 이것을 경하해마지않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위원으로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니까 우견이나마 말씀들여서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합니다. 그러면 일례를 들어서 순서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개인 개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않으려고하나 실지로 묻지않으면 아니될 그런것이 있기때문에 그분에게는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얘기안할 도리가 없어서 얘기합니다.

성북구에 일류요리점이 셋이 있습니다.

성안장이라는데에 강명환 신청장이라는데에 이남훈 운목장이라는데에 문표두 셋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결과를 말씀여쭙겠습니다.

본요리점은 여러분께서 잘아시겠지만 시내에서 최고에 일류요리점이라고 합니다. 제사 조사해볼적에 아무것도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먹구구이고 땅에떨어진 부과행정이 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대한 세금에대한 징수액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기본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말씀들이겠습니다. 운목장에는 방이18개있습니다. 여기에 넷이 샀어먹으면 1회당 만5천환입니다.

그러므로 하로에 한방에 넷이 샀어먹는다면 10만8천환입니다. 그러면 하로의 세금이 얼마나 거기에 다받지않고 8할을 받는다고하면 8만6천4백환 한달이면 수입이 백22만8천환 거기에대한 이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거기에대한 4할을 봅니다.

그러면 약 50만환 그런데 월평균 얼마 남지않는다고해서 이와같은 과세를 했다는 것은 정당한 과세라고 볼수없습니다.

그다음 성안장 방이 15개 거기에 네사람이 앉아서 먹으면 1만5천환 매월9만환 거기서 8할을 본다면 7만2천환 이것을 20일수입으로 보아서 백44만환 거기서 4할이 약 57만6천환 이올시다.

신청장이 방이 9개 거기에도 똑같은 예를 들어서 월44만5천6백환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5천환 내지 3만천환 부과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과히 알수있는 세무행정의 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다음에 목욕탕에 신화탕이라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들면 60환씩 남자는 60환씩 여자는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목욕탕이 신화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60환 여자는 그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250명씩 만5천환 한달25일 평균42만5천환 년액을쳐도 20만5천2백환이래야 그이익으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목욕탕연합회 회장입니다. 거기에 46등이란 것은 너무 과소한것입니다.

장치성씨를 보겠습니다. 장부를 엄밀히 조사해서 했다고 하겠는데 제가 불적에는 조사한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대한 작년에 그만한 이익이 없었으면 금년에 어떻게 집을 수축했는가 그러면 장부는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적당한 수자를 파악해서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본인의 생각으로 는 틀렸으니까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동빠스로 갑니다. 자동차가 몇 대에 자동차한대에 사람 몇사람이 타는지도 조사해야할텐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동빠스하고 몇등이라고 되있습니다.

성북구로보면 음성세원과 양성세원을 가지고 자기집에 들

어 앉아서 고루고각에 들어앉아서 사는사람이 많은것입니다.

이사람을 파악하지 않으면 도저히 공정한과세가 되지않으리라고 봅니다. 또한가지 징수된 사항에 성복구 명시당이라고 하는 시계포가 있습니다.

거기대한 13만환의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결손처분의 이유를 밝혀서 조사한결과 종로3가에 있다고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기대한 저의가 조사하는 수단방법에 의해서 그장소가 어디쯤 있느냐 물었습니다.

종로3가인데 어느쪽인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사도 못하고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13만환이나 과세를 해가지고 근거없는 결손처분을 했다면 이것이 정당한 결손처분인가 본인으로 앉어서는 알수없습니다.

성복구청에서 확고한 부과행정과 징세행정을 했다고 여기 썼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과행정과 징세행정에 대해서는 요것으로 말씀을 여쭙고 그다음 요망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여쭙겠는데 본청에 대해서 세무과에 대해서 세무행정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되는 자료수집을 하지않으면 안되는데 조사계라는 명목은 있습니다만은 3인밖에 안됩니다.

자료수집에 중점을두는지 인원 셋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3~5인의증원을 해가지고 음성세원을 조사하는데 노력할것인지 그점에대해서 밝혀주시기바라고 그다음 중앙세무당국과 횡적연락을해서 세원조사를해서 현재까지의 공백상태를

제거할수있는지 그점에대해서 명확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추상적과 상상적으로만 얘기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해석이 곤란하니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구청의 부과조사부를 보면 아무것도 쓴것도 없고 봉급자에 대해서보면 대개 몇등급이다 한게 있는데 그게 안됩니다.

세령12조에 의해서 봉급자는 봉급액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고 되었습니다.

세령 난것이 벌써10년 올시다.

그러면 현하경제상태는 어떤상태냐 본의원이 이조사를 기초할때는 678억이라는 화폐가 발행되고 이거 보고할때는 780억이라는 발행고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현하 재정상태는 어떻냐 반비례적으로되서 재정상태는 고갈상태에 들어가있습니다.

그이유는 뭐냐 재산이 편재됐다고 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원조사를 하지않고 일방적으로 과세한 폐단이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봉급자에 대해서 말씀들이겠습니다.

봉급자를 제가 한국은행월보를 통해서볼때 12조에 의해서 과세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새 일류봉급자는 적어도 평균 한 사람에 대해서 월 15만원생활비를 갖지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중으로 말하면 1세대에 6만원 하류는 2만7천7백50환이라는 수입을 갖지않으면 생활을 하지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일예를들어 말씀하면 손원일씨만 하드라도 33등에 해당하는 과세액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2만5천7백50환을 가지고 생활할수있는것인지 그분이 도저히 이렇게 할수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는 월급외에 어떤수입이 있을 것입니
다.

세무관사는 비합법적 수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않습니다.

그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한예를 들면 그전에 갓었던
돈을 무역회사나 다른회사에 넣어서 이익을 같이 논아 사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 일류무역업자에게 봉급액만 과세했다는 것은
모순된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볼 때 30등이하의 시민에게는 가혹한 세금
을 부과시키고 30등이상의 윤택한살림을 하는분에게는 혜택을
줬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봉급외에도 관계회사라든지 친척간에 주는돈도
수입이라고하지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입으로 잡아야할것이고 앞으로는 이문제
는 어떻게할것인지 알고싶습니다.

稅率 12조에 대해서 물었는데 장래 국가 정책으로 개정할
때되면 시정한다고 했는데 입법시간 이에 앞으신분은 대다수
가 여기대한 불찬성을 한줄로 압니다만은 이런 영향으로 징
수 성적이 나빠졌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징수성적이 나빠진 것은 돈이없어서 그런
그래서 이30등이상을 대폭 인하하고 누진율로 계정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나 첨부해서 말씀여쭙겠습니다.

국세도 종류가 네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세로 앞서서 네가지
가 있는데 이것은 각관청에다 논아서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
을 통합해서 통합적으로 부과할수 없는가 그점에 대해서 문
겠습니다.

한가지 해화동소재에 공설시장이 있는데 6.25사변후 현금

까지 장기간 사용하였으나 이로부터 시수입이없이 나간다는 것은 시재정상 막대한 손해가 있으니 반차압이라도하여 징수 방법을 취할수 있겠는지 요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질문 끝맺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홍순우 의원; 요번 재무국소관에 대해서는 여러의원께서 말씀해주셔서 잘 아는것입니다.

저는 간단명료하게 이것을 서울시로서 반듯이 지켜야할 질문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서울시 살림살이가 반석위에 올라앉지려면 건전한 방향으로 예산이 나가야 할것입니다.

공연한 수자의 나열이나 혹시 반공적 예상하에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요번 시정감사에 있어서 그러한 예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징수의 할당제를 왕왕히 보았습니다.

가령 서울시에서 2백억이 소요예산이라면 그예산액을 각구청에 할당해서 징수케 하는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어떤 의원은 말씀하시기를 이 세금이 부과를 할적에는 각동회로 하여금 심사케 했다고 하나 그것은 전연 거짓말이고 각시민의 고초를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인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대체 서울시로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동시에 시민소득이라는 것을 머리에 두어야 할것입니다.

다시한번 시민소득으로 말하면 이윤에 임금을 가한소득을 파악해서 꼭 시민소득에 의해갓이고 예산이 부족하지않게 편성되지않으면 안됩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실관계가 개입되고 또한 거기다가 돈있는 사람이나 권력있는 사람은 과세에 대상이 안되는 관계로 말미암아 거기에 무능한 사람만이 과세의 대상이되기 때문에 불합리한 상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국민소득이 얼마가 되는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비가 약40억이나 되는데 아직 10억가량을 지출해야 됩니다.

지출못했기 때문에 재무국에서는 야단이 나오고있으니 심지어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파산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즉 지출예산에 대한 시행예산을 참고해 갖고 과연 서울시는 1년간 공사비에 얼마 소요된다는 것을 참작해야 될것입니다.

그럼으로 여기에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시립각병원의 상태를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요번 시정감사에 있어서 나타난 것을 말하면 시민병원 순화병원 영등포병원등을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시설 즉 시립병원자체가 잘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으로 말하면 의원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각시립병원에서 한 충분한 예산을 세운다음에 그래갖이고 거기에 대한 수입을 가정하는 것이 나는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시민병원으로 말하면 요년에 "매지칸스"여기에 대한 사후처치를 시는 그예산면에 대해서 생각하고있는지 요3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재무관계로 말하면 워낙 팽대한 열세가지의

질의가 있음으로 거기에 세분이 나왔는데 질의에 대해서는 한분씩 더 질의를해도 좋지않을까합니다. 신사회의원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신사회 의원; 저는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이종구의원께서 성북구청관하에 있는 "명시당"에 대해서 질의를했는데 상반된 점이 있어서 질의의 답에 곤란할까해서 상세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명시당"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것은 본의원이 발견했습니다.

주무직원에게 어떻게해서 그러한 다액의 결손처분의 대상이되었는가 물었더니 그이유를 말했습니다.

"명시당"은 어느구에 처해있는가 했는데 어떤 직원이 종로에 있습니다.

종로면 몇구에 있습니까 했더니 아마 종로3가인가 보아요 했습니다.

그러면 당무자로서 켓손마-크를 붙여서 말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종로3가면 어느편인가 했더니 「아마 동쪽인가 보아요」로 역시 켓손마크를 붙였습니다.

제가 물음에 명륜동에 있습니다. 하는사람이 한사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분의말이 다른 것이 이상해서 어떤 것이 진자입니까 했더니 명륜동이 진자입니다 하므로 그러면 어떻게해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말했더니 그 권한은 영업장소는 종로구청에 처해있어서 그자료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어디있는가 했더니 그사람은 현성북구청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말이 다 이리해서 어느정도 윤곽적으로 어느정도 정치성은

떠웠음을 알고 그대로 내 버려두고서 감사보고에 보고로 했
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시정감사를 마
치고 11월26일로 본의원이 체납자명단을 발표했듯이 불명예
스럽게도 그분들의 명단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점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는 대단히 미안히 여기는 바입니다.

어떤개인감정에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발표한뒤에 몇몇분은 항의를 해왔습니다.

이기봉씨가 44등에 체납이 되어있었으며 남송○씨가 87년
도 십만6천2백환중 일부 5만환만 납부했다는 것이며 강일우
씨가 88년도 56등인가 자세히 기억안나나 거기서 일부만 납
부하고 오늘날까지 체납이 되었다는 보고를해서 아마 지상을
통해서 발표되었으므로 본인으로 하여금 이기봉측에서 사실
이 아니라고 항의가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기봉씨는 체납이 되어있지 않은데 어찌하여 체납이 되어
있느냐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89년도 1기분 세금은 9월30일이 납기
일인데 1월연기해서 10월30일이라고 했습니다. 11월1일 감
사를나간 결과 체납자의 명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하여금 체납자냐 아니냐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지금 한시30분입니다. 시간은 지났으니 오늘
이러한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을 듣고이일은 끝마쳐야 겠읍
니다.

그래서 한시간동안 정회를하고 하오2시30분부터는 여러분
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15시 00분 속개)

(「의장긴급이요」 하는이 있음)

○이갑수 의원; 나는 오늘 이것이 질의전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그야말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미끈하게 한다 말이에요 이것이 유감입니다.

이점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에서 특히 이중구의원이 성북구에 대한 문제를 말씀이 계셨는데 그 답변내용을 본즉은 재정분과 소관사무에 여러가지를 질문했는데 그 말미의 답변이 글자 하나하나가 적당히 과세했다고 사료됨 이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 이것이 다 잘되었다고하면은 우리 사무감사한것은 다거짓이란 말이에요.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성북구청에서 답변한 것이 옳다고보면은 우리가 어떤 벌칙을 받아야 될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할것같으면 성북구청에서 우리의 회로서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현실이 맞지않은 문구를 쓴것을 불적에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수 없어요. 다른구청은 전부가 앞으로 고려하겠든지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성북구만은 무엇을 잘했는지 적당하다고 사료됨 그렇게 잘했어요?

언어도단이에요. 이런것은 앞으로 성북구청에대한 문제를 건의할 작정이에요. 이런점에서 집행부당국에서나 앞으로 질의할적에 답변할적에 좀더 성의를 가지고 하지않으면 안되리라고 믿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용; 조기항의원이 자치법에 보조기관에대해서 간단히 해명하겠습니다.

○조기항 의원; 아까 오전회의에서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난 점이 있어서 의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들이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나 보고기관인 부시장만이 답변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그책임소재를 물을수가 없고 법에 위반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의원중에서나 집행부에서 보조기관은 부시장만에 끝일것이 아닐고 국장과장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보조기관이라고 보는것이 옳다 그런견해가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한것 타당치않다는 견해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하는 것은 학자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명안을 내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저의 상식으로 보아서는 법에는 보통법과 특별법이 있습니다.

특별법은 보통법보다 우세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법은 이것이 특별법이에요.

우리 자치법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시의원에 당선이 되었고 또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자치법에 의해서 행정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일반상식으로는 의장이나 국장이나 또는 서기에 이르기까지 역시 기관장의 보조기관이다 하는것은 사실상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자치법에 특별또는 이것은 확실히 일반법과는 좀 구별해서 해석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그런고로 자치법에는 어떻게 되어있는가 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구별이 여기있는데 111조를 볼것같으면 서울특별시와 시읍면에 각기 부시읍면장을 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문을…… 그리고 112조를 볼것같으

면 임명권은 서울특별시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고 시읍면장은 각각 도지사가 임명하게 되어있고 면장은 부면장까지 임명하게 되어있는데 제가 아는 법률상식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역시 부시장만이 보조기관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보조기관은 이런것으로 생각이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해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이로부터 오전회의에 계속해서 재무국에 관계된 질의에 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재무국소관에 말씀들이기전에 한가지 말씀 들이겠습니다.

국과장 혹은 계장이라든지 이런사람을 보조기관으로 안생각하시는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들이겠습니다. 자치법 111조에서부터 115조까지 보조기관이란 제2절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보조기관에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부시장 부읍면장의 규정이있고 또 그다음에 임명관계가 있고 제일 끝에 115조에 국가공무원 혹은 지방공무원을 둘수 있다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점을 보신다면 이것이 보조기관이 국장 뿐만아니라 전직원이 보조기관이라는 것을 이해하실줄 압니다.

다음에 기구라는것이 있습니다 만은…….

(「다알어요」 하는이 있음)

제가 보조기관으로서 말씀들이는것이니 오해 말어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지겠소」 하는이 있음)

첫째 문제로 예산집행에 결함이 있다. 실지에 약 5할밖에 집행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에는 예산편성부터 지불까지 행정계획이 전부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는 제가 말씀들이지 못하고 수입면 지출면을 제가 담당하고있기때문에 그면에 한해서 말씀들이겠는데 결국은 이것이 세수입이 여의치못해서 지출이 예산액내로 가지못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에는 시세수입 혹은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국고보조수입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있는 시세수입 세금을 다 못받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도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또 지출을 임의대로 못한것에대해서 책임을 느낄뿐만아니라 실지 고통을 받고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한것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지못해서 죄송한 감을 금치못합니다. 그리고 세차레 네차레 일시차입이라든지 많은 지출을 앞으로 년도말까지 해야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지장이없이 결산이 되겠느냐하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이것도 제1항 예산집행의 결함여기하고 막역한 관계이기 때문에 합해서 말씀을 들인다면은 년도말까지 지불해야될것이 12조에 따져보니까 약 20억지출할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다 수입할수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지출하는…….

지출해야될 년도가운데에서 혹은 6월에 지출하지않고 년도말이 경과된후에 출납폐쇄기 까지 지출해도 무방한것이 혹있지않느냐 하는것이 생각해볼적에 일시차입의 1억만은 도저히 12월말까지 지출하지않으면 안된다는 형편에 있습니다.

물론 그넘어지는 출납폐쇄기까지 연장해도 무방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공사계약한중에 지출을 고려치않고 출납폐쇄기까지 가서 지출해도 괜찮은 것이 2,3억 있습니다. 그리고 양곡대가 밀려있습니다. 현재 3억있습니다. 그런데 양곡대금도 시재정의 실정을 말씀드리고 농림부에 절충한 결과 어느정도 출납폐쇄기까지 연장이 되어도 부득이한 일로는 이해한다 이정도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불급한 지출이 없는한 그대로 끝나갈수 있으리라고 예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사시설비는 계약과의 약 4,5할밖에 안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비를 시설비보다 훨씬 많이 지출하느냐 이문제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말씀을 들인다면은 건설국장이 답변하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설국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실줄 믿습니다. 저의들로서는 8할 정도의 시비가 들지 않느냐 그후에 약1할정도는 잡비라든지 이런것을 가지고 되고 공사에 예 칙대로 잘한다면 1할 혹은 1할5분이내에 그정도의 이윤이 있다고 저의들은 상식적으로 듣고있습니다. 이문제는 다시 건설국장이 정확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비를 시에서 너무많이 부담한다. 청소업자자체의 수입으로하지않고 시에서 너무많이 부담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것은 동의입니다.

사실은 오물철거수수료를 가지고 청소사업에 부담을 하고 있는데 오물철거수수료를 지출하는외에 시비로 지출한 것이 금년도에 약 1억2,3천만원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개월동안에 총계를 내보았드니 약 8천만원정도의 부담이 되고있습니다. 그것은 청소사업에서 수입되는 오물철거수수료를 가지고 충당하는외에 다른 시수입을 가지고 충당

하고 있는것인데 이점에 대해서는 오물수거수수료를 올리는 방법 또 이 대행제도를 다시없애는 방법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년도 예산에는 여기에 대해서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신년도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잘보시고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초등교육비 일시차입금 유용한문제 이것은 일전에 제가 말씀들인적도있고해서 자세한 것은 다시 중복해서 말씀드릴 필요를 느끼지않습니다.

이 이자에대해서 잠깐 말씀들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듣기는 조리가 안 맞는다고 하는점 그후에 일반회계로부터 초등교육비에 유용한것이있습니다.

즉 현재 6천만원 정도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이자를 다주어야된다는 이론점이 하나있고 또하나는 이것은 완전히 다른것이 올시다만은 2년전에 국민학교교원 봉급을 문교부에서 받아다가 지불하는데 문교부에서 돈이 나오지않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유용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에 이자를 따지는 것이 좀 가리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말서에는 가리기가 어려우니 곤란하다고 말씀들였습니다만은 그후에 부시장님하고 상의한결과 이것은 다소곤란하다고 하드라도 이자만은 일반회계에서 그만큼 수입을 했으니 지출하는것이 당연하다고 해서 이 보고서는 전말서와 달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재산의 처리의 결함 특히 시유지의 대부어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그자세한 것은 전말서에 대게 써있기 때문에 보

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홍제학교에 대부한 것은 당시 홍제학교 기타를 다른데에 물색했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수천평을 빌려서 거기에 지금공사를 하고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불필요하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송우범의원이 사장으로 되어가지고있는 남북건설자 채주식회사에 대해서 약 8천평 빌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처음에 빌릴적에 어떤 개인회사에 대해서 빌려주는 것은 이권을 주는것같이 오해를 받을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지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누차의 의회에 보고서에도 나타났습니다만은 그런 엄격한 안건을 붙혀읍니다.

첫째에는 시유지를 빌려가지고 즉시로 이것을 착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빨리 착공해야 된다는 안건을 하나 붙였읍니다. 그리고 둘째에는 개인이 집장사를해서는 안된다 그런것에 시유지를 빌려줄적에는 시유지위에다 좋은 집의 평당단가를 승인을 얻어가지고 너무비싼 집이 되지않도록 재제했읍니다.

그리고 셋째는 거기에 입주하는 사람을 정할적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입주시켜라. 이런 세가지 조건을 붙혔읍니다.

그런데 그조건이 그대로는 시행이안되고 있습니다.

기일도 다소간 적고 단가도 봄의 단가하고 가을의 단가하고 물가도 다르기 때문에 단가도 다소 다릅니다.

또 입주에 관해서 사전에 승인을 안맞고 지금 현재90동을 짓고있읍니다만은 12동에 대해서는 벌써 입주를 시키고난뒤에 승인을 받고있읍니다.

이런점을 생각해서 아주 취소해버릴수도 있습니다만은 다른데에 시가 후생주택을 갖고있는 그 단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것과 비교해서 그다지 영리적인 결과가 되지않었다고 저 의들은 보고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정을 더조사해서 대과없다면 그대로 할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약 3천평의 대지를 역시 그 회사에서 정기공사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가지를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국민학교 이사장 조정규씨한테 빌려준 땅은 아직 착공을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계약기간중에 12월까지 확실한 계획하에 착공을 하지않는한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경호씨명의로 대부되어가지고있는 임야 약5정보를 무료로 대부했는데 이것은 임차료를 안받느냐 하는 의심이 계시겠습니다 만은 이것은 장경호씨의 인접한데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의 수목이 좋지못하다고해서 수목을 돕기위해서 시에서 처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처리를 하지않고하니 자기가 이것을 처리하고 그 처리한 것으로 해서 수목이 좋아질터이니 이 수목을 계약하므로서 과수원을 좋게 하겠다는 것으로 임대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것을 시유지에 조림을 하는것이지 하등 손해가 있는것이 아니고 오히려 시로 보아서는 시가 유리하다고해서 무료로 대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연 조림을 안하는한 대부기간중에 이것도 취소할까 합니다.

이상 시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상 시유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는 이종구의원께서 호별세부과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건 각구청에서 부과한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하기위해서 각구

청장님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부과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설명들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문제에 대해서 이중구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서는 역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들이겠습니다만은 박수형 의원께서 금년예산집행이 나쁜 것은 결손처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신것은 좀 오해시라고보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것이 40억에 달하고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한해서 한것이 아니고 사변후 결손처분 안하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가가 없어못할 것을 차제에 정리를 한다고해서 4,5년간 누적된 것을 처분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것같이 됩니다.

그오해는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호별세부과가 잘못된 35명에 대한 조사문제인데 이것역시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만은 여기 보고서에 쓴것은 그부과경위를 말씀드린것이고 여기대한 자료는 구청이나 본청으로서 다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시행령12조를 말씀했는데 그것은 5할 가산도 할수있고 3할 감면도 할수있습니다. 같은수입을 가진 두사람에 대해서 생계정도에 의해가지고 한사람은 10할이되고 한사람은 18할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사람은 18이되고 한사람은 2가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음성소득이라고 하는것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계정도에 의해서 5할감도하고 증도 한다는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현재 과세능력이 가감을 하면 할수록 더욱 정실히 개재된다는것도 우리가 알수 있는것이고 사무면으로봐도 어려운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있는데로 가감을하지말라……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하는것은 주저하는 방침으로 되고있습니다.

그것은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모순적으로 나타난것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말씀들인다면 호별세부과에 있어서 인정과세라고해서 말이많은데 이증감을 너무 활용한다면 더 비과학적인것을 만들지않을까해서 잘 적용안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차량세를 한관청에서 취급하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취급하고 있는것은 본청입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조사라든지 운행증이라든지 혹은 기타 여러가지 자료가 본청에 많이있고 한구청에서 조사하는데는 꽤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그대로 취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해화동 시장에대해서 왜 사용료를 받지않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을 동장되시는분이 임대차하기로 내낙을얻고 서류가 도는동안에 중단이 되버렸습니다.

임대차하려고 하는분이 너무 소홀히 임대차계약을 맞지도 않고 시설을 백여만환어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결과를 나중에 시에서알고 시설을 철거해라 해가지고 시에서 소송내고 했었는데 제1심엔 시가 이겼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응치않고 공소를 제기해서 임대차계약이 성립도 사용료도 못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징세할당제라는것을 홍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에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라는 것을 내무부에서 정해줍니다.

또 그목표액을 각구청에 대해서 시장이 배시를 합니다.

그렇다고해서 반듯이 구청에서 호별세를 얼마 부과하라고 하는 구속을 받는것은 아닙니다.

그 배시액이 많다고해서 적게 부과한 실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회의원께서 말씀하신중에 체납자명단 발표하신데 이기붕씨 관계가 어떻게되나 하는 것은 조사한날 당시로 납세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체납은 그때 조사한 당시는 체납이 났읍니다만은 그날 동시로 들어왔읍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들이지않은점은 요전에 조사보고서에 의해서 자세한 것은 기록돼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하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아까 질문하신데 이만한 답변으로 만족합니까?

(「성북구청장 답변 들읍시다」 하는이 있음)

말씀하세요.

○성북구청장; 구행정을 맡어보는 책임자로서 시세입의 중대성을가진 부과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또 문구의표현이 잘못됐다는점은 기록을 하는 담당자의 과오로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아까 이중구의원께서 몇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부임한지 일천하기 때문에 관내사정에 능통치못합니다.

실정을 사무 담당자에게 조사한결과 대개 이렇습니다.

저의관내는 고급요정이 3,4개처 있습니다.

그고급요정은 계절적영업을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소풍나온손님이 많고 겨울에는 휴업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가지 대동버스 과세에있어서 전연 근거없는 과세를 했

다고 했는데 제생각으로는 근거없는 과세는 안된다고 봅니다.

자력조사에 대한것이 잘못됐으면 잘못됐을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손처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에서 여러가지로 납세대상자를 조사해가지고 그분이 없을때에는 동에다 의뢰합니다.

그때도 모르면 결손처분을 하는데 저의단독이 아니고 시에다 보고한후 하게됩니다.

아까 명시당 말씀하셨는데 동에서도 없다고 증명이 붙어있고 경찰서에서도 없다고 붙어있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이런점 양해해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을 잘 명심해서 시정해나갈 것을 여러분앞에 맹서합니다.

○의장 김진용; 더 개별적으로 하실말씀없으시지요. 그러면 김제윤의원이 물으신 시립극장운영문제 그리고 운수행정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답변하신답니다.

○부시장; 김제윤의원으로부터 운수행정에 대해서 여러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에 과거에는 운수과를 두어가지고 처리했는데 지금은 건설국관리과에 운수계를 두어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자치법에 운수사업은 건설국소관이 올시다.

운수계를 두어가지고 처리함으로서 복잡한 사무가 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사무를 그렇게 처리하는 직제를 그렇게 바꾸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과에다 붙이는 것이 맞지않다 이런말씀인데 앞으로 이것을 과를 두어가지고 처리하려면 모르지만 과를 안두고 현재 운수사업을 붙이는데에는 관리과에 부칠 수밖에 없어서 거기에다가 부처가지고 처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현재 사무를 여러군데에서 하니 이것을 한군데에서 하는것이 좋지않느냐 이런말씀인데 이내용은 그렇습니다.

현재영업면허를 받아가지고있는 차륜은 지금운수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에 한해서는 지금경찰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군데로 합칠수없느냐 또 경찰에서 하고있는 법적근거는 무엇이나 이런말씀인데 영업면허를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차륜은 지금 현재의 운수법칙에 의해서 이것은 차륜계에서 하고있지만 영업행위를 하지않고 자가용차륜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취급하고있는 그근거는 그차륜의 성격에 비추어서 그차륜취체규칙이라는 것이 경찰법규에 취체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륜을 움직일려면 검사를 해야됨으로 여러가지 검사를 경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하고 취체하는데가 경찰인 관계로 해서 자가용차륜은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을때는 받들어서 앞으로 그렇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시공관에대한 말씀은 지금 현재 이렇게 되고있습니다.

아까 김의원 말씀대로 일본사람이쓰든것인데 해방후에 김모라는사람이 이것을 맡아서 경영을 하다가 이것을 서울시가 인수해서 시공관으로 운영을 해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당시에는 서울특별시와 관재국과의 계약이되었던 것입니다. 이계약관계가 6.25사변이후로 애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당시 관재청에서 이것은 서울특별시에게 임대료를 몇 번청구해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약을 전제로하고 임대료를 청구해온것이라 이런 것은 누구든지 해석이되고 그런만큼 이시공관을 공용화해서 서울특별시의 재산으로 할려고 공유화승인을 88년 3월14일 날자로 냈든것입니다.

냈는데 이것은 5월5일자 국무회의에서 국립극장으로 쓰는 것이 국무회의에서 결의가 되어서 지금현재의 법적으로 누구 것이냐 이렇게 따지게되면 국립극장으로 되어있는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당시에 관재국에도 임대료를 바칠테니 우리서울 특별시로 임대계약을 하자고 몇 번줄랐든 모양같습니다.

그런데 또 문교부가 국립극장으로 쓰겠다 했지만은 국립극장을 6.25사변전에는 부민관을 쓰다가 6.25사변이 나서 국립극장으로 부민관을 사용을 못해버렸는데 이래서 이것이 누구 것이냐하고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되는 것이냐고 하는데 대해서 대단히 석연치 못합니다만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관재청장은 문교부에서 관리하는 국립극장으로 알고 저의가 임대차계약을 한다고해도 거부하고 다시 공유화할려고해도 이것은 문교부에 갔다해서 대단히 곤란한 입장에 있는것같습니다.

또 이시공관운영이 교육위원회로 소관이 된다하는 얘기도 있고 지금 직제는 아직 시에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되어있읍니다만은 어떻든지간에 이 시공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공관이 되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공관운영위원이 16명이 있는데 그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인데 현재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무엇을 하느냐하면 시공관 ○체를 하는것이 아

나라 푸로 상연을 주로하고 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 그운영실태가 과연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것을 검토하고 위원수도 바꾸어보자고 지금진행중에 있습니다.

시공관에 직원이 43명있는데 과연 그사람들이 필요하느냐 안느냐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말씀들이겠습니다만은 이 직제는 운영상 계속해서 이 방면에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운영위원회의 직제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시공관문제하고 운수행정문제에 대한 답변을 이정도를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사회국장이 먼저 변명했는데 올라온 김에 사회국에 관련된 것이 있어서 몇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당포가 그 성격으로 봐서 세공민의 유일한 금융기관으로서 좋은것인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여러가지 폐단이많다 말씀하시는데 감사보고의 말씀을 들은후로 전부 정리를 시작해가지고 지금현재 정확하니 조사를하고있고 거진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유실된 물건의 대가처리에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불일간에 말씀하신대로 처리가 잘될것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잘 운영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시민병원이 유료로 치료를 받아야될사람이 무료로 받고 무료로 치료받을사람이 유료로 받고있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그런사실이 많은것같습니다.

그 유료 무료 구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것같습니다만은 앞으로 병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유료 무료를 여하히 취급하느냐하는 문제는 이제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이 병원사업비를 내년도에 병원사업비를 심의해주실때 아마 상당히 깊이들어가서 심의를 해주실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에 있어서는 금년도 실정으로보아서 병원수입을 2억2천8백40만환을 병원수입을 해보았읍니다만은 이 수입이 무료를 많이 취급하고있는 까닭에 이렇게되면 운영하기는 유료인지 무료인지 흐리멍텅해서 내년부터는 이 수입을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서 여기서 예산상 책정할수있는 방향으로 올리도록 운영방침을 좀 강하게 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을 12월말 현재로 4천만환밖에 보지못했습니다. 지출은 얼마냐하면 3억2천6백만환을 병원사업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불적에 여러분의 감사한 것을 충분히 생각할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잘운영해보기 위해서 아까도 홍의원말씀이 병원시설을 잘해놓으면 환자가 늘어서 수입이 늘어갈 것이다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신년도에는 이 병원사업을 그야말로 세공민이 이용할수 있는 병원을 만들어 볼려고 개선하겠습니다.

부녀행정이 잘못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이 그렇게 안되는줄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이 부녀사업도 여러가지 시설을해서 일을 해볼 작정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160만가운데에서 80만이 부녀라고 보고있습니다.

어쨌든지 그 보다는 낮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병원은 어떻게 할 작정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시민병원에 대해서는 이 존폐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모처럼있는 병원하나 줄여야될 이유는 이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않고 국고보조라도 얻어서 하나라도 있는 병원을 그대로 살려야되

겠다는 그런생각에서 보조절충도 해보았읍니다만은 이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약간의 보조를 얻을 희망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보조액수가 확실하지 못한까닭에 말씀할수없읍니다만은 이 보조를 얻을 희망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액수에 따라서 그병원하나라도 없애지않고 어디판데로 옮겨서 운영을 해볼 작정으로 예산상에 놓았읍니다.

대개 사회국관계하고 시공관하고 운수사업에대한 말씀을 이정도로 끝이는 바입니다.

(「의장」 하느이 있음)

○김인기 의원; 아까 조기항의원이 질의할적에 한말씀은 안하고 오늘 여기올른 문제에 있어서 한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방 가마니 서울시재정면을 볼때에 재산이 어느구석에 있는지나 알수없어요.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에 있는…… 여러분이 다아시겠지만 우리 서울 수도에 있어서 아마 높은 위치에 놓인답니다. 여기에다가 송우범씨에게 8498평을 대부해주고 1년에 40환이라는 임대료를 받고있으니 이것을 꿈속에서 계약을 했는지 정신병자인지 알수없어요.

여기에 방법을 여러분이 다아시겠지만은 아마 집행부의 시장이하 국장 과장 계장 지방공무원까지 통털어서 서울시내에서 땅한평에 40환씩하는곳을 찾아보세요.

땅을 얻을려면 적어도 한평에 1년에 5·6천환이나 주어야 될것이에요.

그런데 40환이라는 금액을 받고서 일개인에게다가 빌려주고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전채민주택지라 한국이 동난을

맞았으니까 이런문구가 나왔지 안맞았드라면 무엇이라고 했겠어요?

이것을 제가 다조사해보니까 전재민은 하나도차지 못했던 말이에요.

여기에 불것같으면 적어도 2백50만환 내지 4백만환까지 집이 매매되고 있어요.

이것이 전재민이들집이에요?

그것을 살수 있는 사람이 전재민이라고 할수있을까요?

나 도저히 알수없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대체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고 할것같으면 시유재산을 확보해놓고 이것을 대부할적에도 정신을 차려서 대부를 해야한다 말이에요. 소위 남북건설자재회사라는 명칭을 붙여놓고 송우범씨 1개인에다가 어느정치성에 관련시켜가지고 행정해서는 안된다 말씀이에요.

내 듣건데 이냥반은 대한민국의 법률을 좌우할수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가장 유명한 국회의원의 한분이라고 나는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서울 말단 행정기관인 서울시로서는 정치면에 휩쓸려서 넘어가지말고 공정한 입장에서 시민의 복리를 위한일을 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아까 재무국장의 말씀은 흐리멍텅한 답변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시민이 피비린내 나는 땅을 흘러가지고 이런 시유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책임자되시는분은 이것을 개인의 정치성에 휩쓸려서 이런 시정을 해나간다고 하시면은 서울시민은 다 죽고말어요.

이와같은 일을한데 대해서 집행부책임자는 마땅이 책임질것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시정해 가지고 일반시민에게 복리가

돌아가도록 하지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시의 재산을 만들적에는 막대한 고가의 금액을 주어가지고 샀으면서 팔적에는 헐값이란 말이에요.

이상모순성을 지적했으니만큼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확고 부동하게 세우겠다는 답변을 나와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용; 여러가지 질문에대한 답변이 빠진것이 없습니까?

○김경원 의원; 김경원이 올시다.

오늘 질의전이 무미한것 같습니다.

질의할때는 분명한 질의를 할것이고 답변역시 분명한 답변을 해주어야겠습니다. 아까 부시장께서는 시공관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부시장이 아는지 모르는지 어떤분이 아는분이 있다면 답변하십시오.

리 남는돈을갓이고 무료 노동자합숙소를 하겠다고 이와같이 분명히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약을 했습니다.

이결과가 오늘날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히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의장 김진용; 김인기위원의 답변을 재무국장이 나와서 말씀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잠깐자리를 떼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을 못들어서 빌려주어서 막대한 수수료를 받았다는 그러한 소문도 항간에 있는데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와 나온길에 한가지더 얘기하겠습니다.

공익전당포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정월달에 서울특별시에서 구호행정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3천5백만환을 공익전당포에다가 들려서 서민을 위한

금융대책을 세워주겠다. 거기에서 시공관에 있어서 현재 서울시에서 수입을본다면 매일아마 흥행하는데 사용료 하루 5천환 만환 들어온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그렇지 않는것같습니다.

사실 극단에서 들어와서 흥행을 하는데 4·6할로 하고 있어 하루에 5천환 내지 만환이 들어오고 있는것이 사실인것 같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돌리는 영사기계를 시공관에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 40환이라는 것이 너무나 싸지 않느냐 또 하나는 정지를 했다고하나 그것은 정지를 할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환이라는 가격이 사지않느냐 하는점 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할때는 이시가의 6분이상으로 되어있는데 작년에 사용료를 올리려고 조치를 했었으나 대통령각하의 긴급명령에 의해서 전년도보다 올려서는 안된다해서 유감됩니다만은 40환밖에 안되었습니다.

정지비는 필요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하나 그것이 본래진탕 이였었습니다.

본래그것이 피난민농지였었는데 서울시에서 전채민주택을 짓기위해서 사용목적을 변경인허를 받고 전에 경작지였었는데 그것을 짓기위해서 들어다가 신청이있어서 대부를 해주었는데 땅은 진탕이고해서 정지비가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의석에서 일동웃음)

○의장 김진용; 시공관문제에 대해서는 문화과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과장; 김경원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공관에서 받고있는 것이 시에 정당한 수입하는외에 약간 받고있는 것이 사실있는것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하면 6.25사변후에 시에서 전부시설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명장치를 시공관직원이하여 후생용으로 쓰는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도 알기를 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신년도부터는 시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공관 영사기를 대부해주고 있지않냐하는 것을 저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지실한 결과에 있어서는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충분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6.25사변전에 있던것을 잊어버리고 거년여름에 시에서 6백만원 들여서 구입하였든 것입니다.

그 기계를 빌려준다거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조사된바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만큼 답변을 올리려 합니다.

○의장 김진용; 4시 30분이 되었습니다.

답변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박수형 의원; 경찰국장의답변이 빠졌습니다.)

○의장 김진용; 경찰국장의 답변이 빠졌습니다.

경찰국장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에서 의장에게 연락을하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말하겠습니다.

경찰국장이 대통령모시고 어제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전당포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어야지요 하는이 있음)

전당포에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사회국사회과장; 공익전당포수입금에 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이 공익전당포설치의 목적이 원래 영세시민의 공익을 도모하자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윤을 낸다고 하는것은 근본정신과 거리가 멀고 현재 공익전당포의 현황을 보니 이윤이나는 사업은 안입니다.

금리가 현재 월2분으로 되어있습니다.

겨우 채산이 맞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노무자합숙소운영에 보조될 정도의 수입이 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면에 있어서 별도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는 큰수입을 예상할수 없는 것입니다.

(「3천5백만환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이 있음)

3천5백만환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입니다.

3백만환이 시설자금이고 5천만환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6백70만환이 본청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이요」 하는이 있음)

○강을순 의원; 오늘 마치 집행부관계관들이 나와서 답변을 한데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들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적에는 꿈에도 생각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사를 장시간하고 오늘답변을 듣는 차제에 있어서 마치 국회 소위 요지음 부르

는 자유당 국회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각부장관들이 나와서 김빠진 맥주와 같은 답변을 함과같은 답변을 하듯이 함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가지가있으니 또한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주무관계자들은 맥주빠진답변(일동폭소)을 하지말고 좀더 나머지 관계관들이 나와서 답변할때에는 어느면에 어느관계자는 어떤 잘못된점이 있으니까 제명한다든가 앞으로 어느날까지는 하겠다는 등의 명확한 답변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국회 자유당 국회라고 부르는 국회에서 답변하듯이 그러한 태도를 하지말고 시민의 복리를위한 방향으로 시정할 각오로 각의원 여러선배께서 감사한 결과 기분에 맞는 답변을 즉 사실상 사실있는 것을 주무국장이 나와서 좀더 심각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용; 강을순의원의 말씀과같이 김빠진 맥주와같은 답변을 말해주십시오.

모레 7차회의의 의사일정을 말합니다 「42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장 시정방침연설과 시정감사결과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16시 05분 산회)
